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2016. 3. 11.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원일 및 제출자 : 2016. 3. 2.(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16. 3. 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3.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희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분양하고 있으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텃밭 분양 방식을 무료에서 유료분양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시텃밭 유료분양을 위한 사용료 징수근거 및 적정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사용료 조항 명시.(안 제2조제6호 신설)
-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분양하며, 도시텃밭 분양 참여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및 기준 마련. (안 제5조의2, 별표1 신설)
- 분양대상별 분양금액

- ▶ 일반시민 : 1년간 1구좌(16m²)기준 사용료 30,000원
- ▶ 어린이집, 학교 등 : 1년간 1구좌(16m²)기준 사용료 15,000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길원)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텃밭 분양방식을 무료에서 유료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도시텃밭 유료분양을 위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사용료 징수기준은 경기도내 도시텃밭으로 유료분양 중인 타 시군의 분양가격(5평기준 4~5만원)과 관내 민간운영 주말농장의 분양가격(5평기준 평균 59천원)을 비교하고, 장비임차, 급수시설, 퇴비 등의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사후관리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